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5321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 종결2017. 4. 14.

판결 선고2017. 5.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670,978,436원 및 그 중 172,486,2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2.부터, 68,557,089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169,574,104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259,936,946원에 대하여는 2016. 3. 10.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670,978,436원 중 411,041,404원 및 그 중 172,486,2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2.부터, 68,557,089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169,574,104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D, E은 피고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여 위 670,978,436원 중 241,467,074원 및 그 중 172,486,2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2.부터, 68,557,089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각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6.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8. 7. 접수 제310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124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가. 피고 C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 8. 접수 제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때 피고 B(순번 1 내지 5), 피고 C(순번 1 내지 3), 피고 D, E(순번 1, 2)은 피고 회사가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08. 6. 9.	부산은행	H	2009. 6. 9.(2016. 6. 3.로 변경)	170,000,000원(200,000,000원)
2	2010. 6. 29.	우리은행	I	2018. 6. 29.	135,000,000원(150,000,000원)
3	2012. 7. 16.	한국씨티은행	J	2013. 7. 16.(2016. 7. 15.로 변경)	170,000,000원(200,000,000원)
4	2014. 9. 2.	하나은행	K	2015. 9. 2.(2016. 9. 2.로 변경)	170,000,000원(200,000,000원)
5	2014. 9. 2.	하나은행	L	2015. 9. 2.(2016. 9. 2.로 변경)	85,000,000원(100,000,000원)

2)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각 비용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대출은행들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대출은행들에 피고 회사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1	부산은행	2016. 1. 12.	2016. 1. 14.	2016. 4. 22.	172,816,764원
2	우리은행	2016. 2. 25.	2016. 3. 17.	2016. 4. 29.	68,708,539원
3	한국씨티은행	2015. 12. 17.	2016. 1. 15.	2016. 4. 5.	170,406,982원
4	하나은행	2015. 11. 18.	2016. 1. 4.	2016. 3. 10.	173,467,369원
5	하나은행	2015. 11. 18.	2016. 1. 4.	2016. 3. 10.	86,786,242원

2)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330,506원을, 순번 2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151,450원을, 순번 3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832,878원을, 순번 4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316,665원을 각 회수하였다. 이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528원(순번 1 신용보증계약 175원 + 순번 2 신용보증계약 관련 41원 + 순번 3 신용보증계약 226원 + 순번 4 신용보증계약 86원)이다.

3) 원고가 구상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096,586원이고, 그 중 1,673,075원을 회수하여 423,511원이 남아 있다.

다. 처분행위 등

1) 피고 C은 2015. 8. 6. 피고 F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억 원)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7,000만 원)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F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8. 7. 접수 제310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124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피고 C은 2016. 1. 8. 피고 G과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G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 8. 접수 제5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978,436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670,554,397원1) + 확정 지연손해금 528원 + 법적절차비용 잔액 423,511원) 및 그 중 순번 1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172,486,25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4. 22.부터, 순번 2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68,557,08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4. 29.부터, 순번 3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169,574,10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4. 5.부터, 순번 4, 5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259,936,94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3.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3.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 B과 연대하여 위 670,978,436원 중 411,041,404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410,617,451원 + 확정손해금 442원 + 대지급금 423,511원) 및 그 중 순번 1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172,486,2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2.부터, 순번 2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68,557,089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순번 3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169,574,104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3.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 E은 피고 회사, B, C과 연대하여 위 670,978,436원 중 241,467,074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241,043,347원 + 확정손해금 216원 + 대지급금 423,511원) 및 그 중 순번 1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172,486,2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2.부터, 순번 2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68,557,089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3.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F, G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매매 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것은 무자력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F, G의 악의는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F, G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G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아

판사정은영

판사황민웅

별지

1) = 순번 1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172,486,258원 + 순번 2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68,557,089원 + 순번 3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169,574,104원 + 순번 4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173,150,704원 + 순번 5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86,786,242원